



개인연금 지급형태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

최장훈 연구위원

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완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.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자 중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자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함.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소득인정액이 연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낮아지므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. 이는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저촉이 되므로 기초연금 제도는 개인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

■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완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로 ‘기초연금법’ 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초연금액이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임¹⁾

-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자 중 소득하위 70%임
- 지급액은 2018년 2월 기준 단독가구 최대 20만 6,050원(부부가구 33만 5,920원)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됨
 -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됨²⁾
- ‘기초연금법’ 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초연금액이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임³⁾
 -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46.5%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.6%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정부는 기초연금을 향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

1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8. 2. 22)

2) 보건복지부 웹사이트(basicpension.mohw.go.kr) 참조 바람

3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8. 2. 22)

■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분포를 고려하여 산출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함⁴⁾
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됨
 -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84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%를 추가로 공제한 액수와 기타소득을 합한 액수임
 -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하고 부채를 다시 차감한 금액에 4%를 적용하여 산출함
- 선정기준액은 2018년 기준 단독가구 월 131만 원, 부부가구 월 209만 6천 원임

[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]

○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- 소득평가액 = $\{0.7 \times (\text{근로소득} - 84\text{만 원})\} + \text{기타소득}$

(※ 기타소득은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그리고 무료임대차소득으로 구성되며 연금소득은 재산소득에 포함됨)

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$[\{(\text{일반재산} - \text{기본재산액}) + (\text{금융재산} - 2,000\text{만 원}) - \text{부채}\} \times 0.04 \div 12]$
+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■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개인연금의 지급형태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-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시금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이 연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
 - 예를 들어, 개인연금 적립액이 1억 원인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33만 원이 됨⁵⁾
-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액은 기타소득(재산소득)으로 분류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
 - 개인연금 적립액 1억 원을 10년 확정연금으로 받을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83만 원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50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⁶⁾

4)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(basicpension.mohw.go.kr) 참조 바람
 5)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에 4%를 적용하므로 $1\text{억} \times 0.04 \div 12 = 33\text{만 원}$ 이 됨(만일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면 $(1\text{억 원} - 2,000\text{만 원}) \times 0.04 \div 12 = 27\text{만 원}$ 이 됨)
 6) 월 기타소득은 $(1\text{억 원} \div 10) \div 12 = 83\text{만 원}$ 이 됨(이자율은 고려하지 않았음)

-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
 - 개인연금 적립액 1억 원을 소유한 가구가 이 적립액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 월 127만 원 ~ 176만 원인 부부가구의 경우 개인연금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됨⁷⁾
-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뿐 아니라 개인연금과의 관계 등 다양한 제도 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
 -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가 연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음
 - 연금으로 받을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검토될 필요 있음 **kiri**

7)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7만 원보다 낮거나 176만 원보다 높을 경우에는 개인연금 적립액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기초연금 수급권에 차이가 없음. 전자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, 후자의 경우 모두 받을 수 없음